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3079 |
|----------|------|

2025년 9월 12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1. 심사결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년 8월 11일

다.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라. 상 정 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9월 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 세계시민교육 및 청소년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며, 해외 문화·언어에 대한 지식 및 네트워크 등 자원이 필요함.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세계 시민 육성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다문화교육 및 국제이해 교육 활동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 “센터”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청소년을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2층
- 개관일자 : 2000. 5. 27.
- 시설규모 : 914.6m<sup>2</sup>
- 주요시설 : 강당, 세미나실, 북카페,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471백만원('25년도)

- 산출근거

· 인건비 630백만원, 운영비 104백만원,  
사업비 705백만원, 사업외지출및기타 3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재)대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1.~2028.12.)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 세계 시민 육성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다문화교육 및 국제이해 교육 활동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 "센터"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청소년을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2층
- 시설규모 : 914.6㎡
- 개관일자 : 2000. 5. 27.
- 주요시설 : 강당, 세미나실, 북카페,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471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630백만원, 운영비 104백만원, 사업비 705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3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 문화교류, 다문화교육, 국제교류정책 등의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2000년 개관하여, 2012년부터 13년간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이하 ‘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면적 914.6㎡(서울 유스호스텔 2층) 시설로, 현원 11명(정규직 10명, 계약직 1명, 2025.6.30. 기준)의 직원이 14억 7천 1백만원(2025년)의 예산으로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 구 분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선정방법 |
|--------|-----------------------------|------------|------|
| 최초위탁   | 2년 8개월('00.5.1.~'02.12.31.)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공개모집 |
| 2차 위탁  | 2년 ('03.1.1.~'05.12.31.)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공개모집 |
| 3차 위탁  | 3년 ('06.1.1.~'08.12.31.)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공개모집 |
| 4차 위탁  | 3년 3개월('09.1.1.~'12.3.31.)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공개모집 |
| 5차 위탁  | 3년('12.4.1.~'15.3.31.)      | (재)대산문화재단  | 공개모집 |
| 6차 위탁  | 2년('15.4.1.~'17.3.31.)      | (재)대산문화재단  | 재계약  |
| 7차 위탁  | 3년('17.4.1.~'20.3.31.)      | (재)대산문화재단  | 공개모집 |
| 8차 위탁  | 2년('20.4.1.~'22.3.31.)      | (재)대산문화재단  | 재계약  |
| 9차 위탁  | 2년 9개월('22.4.1.~'24.12.31.) | (재)대산문화재단  | 공개모집 |
| 10차 위탁 | 1년('25.1.1.~'25.12.31.)     | (재)대산문화재단  | 재계약* |

#### ※ 제10차 위탁(재계약) 위탁기간(1년) 사유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4.7.18.)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의견)
  - 재계약 기간 조정 필요 (2년 → 1년)
  - 기존 서울유스호스텔 및 청소년 특화시설 등과의 유사·중복 기능 정비방안 마련 필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안건 후속조치 이행심의 결과('24.8.2.) : 적정 (조건 이행)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10.30.) : 적격 (재계약 기간 1년 조정)

### 〈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5.6.30. 기준)

| 구분 | 총계 | 정 규 직 |    |    |    |    |    |    |    |    |    | 비 정 규 직 |    |             |
|----|----|-------|----|----|----|----|----|----|----|----|----|---------|----|-------------|
|    |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기능 | 고용 | 소계      | 계약 | 기타<br>(촉탁직) |
| 정원 | 11 | 11    | 1  | 1  | 1  | 2  | 2  | 4  | -  | -  | -  | -       | -  | -           |
| 현원 | 11 | 10    | 1  | -  | -  | 2  | 1  | 6  | -  | -  | -  | 1       | 1  | -           |

### 〈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사업구성 〉

|   | 분야   | 주요 사업 내용                                                 | 계획    |
|---|------|----------------------------------------------------------|-------|
|   | 총계   | 3개 분야, 21개 사업                                            |       |
| 1 | 국내사업 | 뿌리깊은 세계유산, 청소년 모의유엔 대회, 미지갤러리 운영사업, 미지 스튜디오,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 9개 사업 |
| 2 | 국외사업 | 미지 희망원정단, 동아시아 청소년교류사업, 미지 청소년 글로벌 봉사단, 청소년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등 | 7개 사업 |
| 3 | 보급사업 | 희망UP, 세계유산 여행교실,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자 워크숍,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 5개 사업 |

### 〈 2025년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 구분       | 예산과목      |          | 2025년     | 구성비율 | 2026년(안)  | 구성비율 |
|----------|-----------|----------|-----------|------|-----------|------|
| 세입<br>예산 | 계         |          | 1,470,582 | 100% | 1,567,655 | 100% |
|          | 위탁금       | 민간위탁금    | 892,394   | 61%  | 901,425   | 58%  |
|          |           | 민간위탁사업비  | -         | -    | -         | -    |
|          | 보조금       | 국비보조금    | -         | -    | -         | -    |
|          |           | 시비보조금    | 353,700   | 24%  | 453,700   | 29%  |
|          |           | 구비보조금    | -         | -    | -         | -    |
|          | 사업수입      | 교육문화사업수입 | 109,510   | 7%   | 109,510   | 7%   |
|          |           | 법인전입금    | 84,000    | 6%   | 84,000    | 5%   |
|          | 사업외<br>수입 | 이월금      | 11,958    | 1%   | -         | -    |
|          |           | 기타잡수입    | 19,020    | 1%   | 19,020    | 1%   |
| 세출<br>예산 | 계         |          | 1,470,582 | 100% | 1,567,655 | 100% |
|          | 인건비       |          | 630,327   | 43%  | 682,874   | 44%  |
|          | 운영비       |          | 104,187   | 7%   | 104,248   | 7%   |
|          | 사업비       |          | 705,090   | 48%  | 761,513   | 49%  |
|          | 사업외지출     |          | 18,500    | 1%   | 18,500    | 1%   |
|          | 예비비       |          | 520       | 0%   | 520       | 0%   |
|          | 지난년도지출    |          | -         | -    | -         | -    |
|          | 반환금       |          | 11,958    | 1%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          | 이윤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의 성과를 2024년 8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이를 기반으로 2025년 하반기의 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의회가 본 동의안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평가(2023년) 〉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주)가치경영원]
- 평가기간 : 2023년도(실시기간 2024.3.~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88.98점(100점 만점)

-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3.1.~12. 성과) 결과 업무매뉴얼 수립, 연차제도 비효율 개선, 외부위원 참여율 제고, 분기별 효율적 예산집행 계획 마련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 2024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사항 〉

-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구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관련 실적에 대한 명시가 요구됨. 만일 매뉴얼 구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업무매뉴얼 수립을 통한 사업 연속성 제고 방안 마련이 바람직할 것임
- 기관의 평균 연차사용률은 77%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연차축진 제도 또한 운영하여 비효율을 초래함. 이에 연차수당 지급 대신 연차축진 및 연차저축제도 활용에 대한 방향성 모색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율(1차 회의 53.33%, 2차 회의 46.67%)과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율(33.33%)이 낮으므로,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 평가년도 전체예산 집행률은 78.36%로 저조하며, 분기별 집행률의 경우 1분기 68.69%, 2분기 80.62%, 3분기 117.61%, 4분기 67.25%로 상·하반기의 집행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계획의 적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분기별 효율적 예산집행 마련을 통해 연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평가 결과에서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 수립, 운영위원회 등의 외부위원 참여율 제고, 분기별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 마련 등을 지적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 운영에서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무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다른 청소년시설에서도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내부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의 참여율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2023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2.1.~12. 성과) 평가결과(95.19점)와 비교할 때, 2024년 평가결과(88.98점)가 크게 하락(6.2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25년 운영평가 결과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시민만족도 조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13년 이상 본 시설을 운영한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최근 3년간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 연 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
| 2022년 | 민간위탁계좌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세 미처리 | 조치 완료 |
| 2023년 | 시민만족도 조사 미흡 (응답자 수 저조)      | 조치 완료 |
| 2024년 | 추가경정예산 수립 절차의 미흡            | 조치 완료 |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 미흡             | 조치 완료 |

- 한편, 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2025년 기준 국내사업(뿌리깊은 세계유산, 청소년 모의유엔 대회, 미지갤러리 운영사업 등), 국외사업(미지 희망원정단, 동아시아 청소년교류사업, 미지 청소년 글로벌 봉사단 등), 보급사업(희망UP, 세계유산 여행교실, 청소년 국제교류 자원사업 등)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이용률('23년 90.7%, '24년 89.6%, '25년 90.7%)은 90%를 넘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 최근 3년간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사업별 실적 〉

(단위 : 명)

| 연 도         | 사 업  | 계획인원    | 달성인원    | 청소년인원   | 청소년비율        |
|-------------|------|---------|---------|---------|--------------|
| 2023년       | 국내사업 | 123,851 | 77,349  | 68,053  | 88.0%        |
|             | 국외사업 | 2,007   | 2,821   | 2,734   | 96.9%        |
|             | 보급사업 | 8,066   | 11,799  | 11,499  | 97.5%        |
|             | 시설사용 | -       | 28,055  | 26,600  | 94.8%        |
|             | 합 계  | 133,924 | 120,024 | 108,886 | <b>90.7%</b> |
| 2024년       | 국내사업 | 113,176 | 83,112  | 73,525  | 88.5%        |
|             | 국외사업 | 2,970   | 3,972   | 3,780   | 95.2%        |
|             | 보급사업 | 6,566   | 12,431  | 11,857  | 95.4%        |
|             | 시설사용 | -       | 5,486   | 4,929   | 89.8%        |
|             | 합 계  | 122,712 | 105,001 | 94,091  | <b>89.6%</b> |
| 2025년<br>6월 | 국내사업 | 72,626  | 17,493  | 15,941  | 91.1%        |
|             | 국외사업 | 2,306   | 609     | 293     | 48.1%        |
|             | 보급사업 | 5,410   | 3333    | 3,078   | 92.3%        |
|             | 시설사용 | -       | 1,471   | 1,471   | 100%         |
|             | 합 계  | 80,342  | 22,906  | 20,783  | <b>90.7%</b> |

- 유튜브 조회수 : '23년 136,141명, '24년 86,476명, '25년 6월 35,568명

※ 여성가족부,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7p

다. 이용자 관리

□ 업무내용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다만, 2025년 6월 기준 국외사업의 청소년비율(48.1%)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외사업이 대체로 청소년들의 여름방학(7월~8월) 이후에 집중된 결과로 보여짐.
- 특정시기에 편중된 사업추진에 직원들의 업무 과중, 분기별 예산집행률의 편차 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추진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4년 제6차, '24.7.18.) 심의결과(조건부 적정), 서울유스호스텔 및 기운영 중인 청소년 특화시설 등과 통폐합 등 유사·중복기능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재계약 위탁기간(1년) 사유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4.7.18.)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의견)

**<2024년 제5.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現수탁법인         | 위탁예정기간                      | 심의결과      | 의견                                                                                       |
|---------------|-----------------------------|-----------|------------------------------------------------------------------------------------------|
| (재)대산<br>문화재단 | 2년<br>(25.01.01.~26.12.31.) | 조건부<br>적정 | <b>[조건]</b><br>- 재계약 기간 1년으로 조정<br>- 서울유스호스텔 및 기운영 중인 청소년 특화시설 등과 통폐합 등 유사·중복기능 정비 방안 마련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안건 후속조치 이행심의 결과('24.8.2.) : 적정 (조건 이행)

**<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추진 보완계획>** (청소년정책과-13881호, 2024.7.26.)

2. 보완계획

- 재계약 기간 조정 : 2년 → 1년 [재계약 협약 시 위·수탁기간 1년('25.1.1~'25.12.31.)으로 조정]
- 유사·중복기능 정비
  - 문화교류센터는 서울유스호스텔, 특화시설(미래진로센터)과 운영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이 상이하나, 일부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하므로
  - 향후 문화교류센터 사업계획 시 타 시설과 기능중복이 없도록 면밀히 프로그램 편성·추진
  - 청소년시설 재구조화 TF 운영을 통한 기능 통·폐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 수립('24.9월 중)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10.30.) : 적격 (재계약 기간 1년 조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3079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 세계시민교육 및 청소년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며, 해외 문화·언어에 대한 지식 및 네트워크 등 자원이 필요함.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세계 시민 육성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다문화교육 및 국제이해 교육 활동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 “센터”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청소년을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2층
- 개관일자 : 2000. 5. 27.
- 시설규모 : 914.6㎡
- 주요시설 : 강당, 세미나실, 북카페,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1.1 ~ 2028.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470,582천원('25년도)
- 산출근거 : 인건비 630,327천원 운영비 104,187천원  
사업비 705,090천원 사업외지출및기타 30,978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수민 (☎02-2133-4115)